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공동수급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및 주식회사 ○○○○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장비 등을 동원하여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공동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2021년 ○○시(군, 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업무
2. 업무량: ○○개 지구, ○○필지(○,○○○㎡)
3. 사업비: 총 ○○억원정(₩○○○○○○○)
 - 지적기준점 측량비를 제외한 금액 중 주관사 65%, 협력수행자 35%
4. 사업기간: 지적소관청과 계약일로부터 3개월(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시행기관: ○○시장(군수, 구청장)

제2조(공동수급체) ① 공동수급체라 함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지적측량수행자” 2개 사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주계약자

- 1)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2) 주소:
- 3) 대표자 성명:

나. 협력수행자

- 1)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2) 주소:
- 3) 대표자 성명: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계약자로 한다.

③ 대표자는 업무위탁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권리 및 의무를 대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여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 ① 지적기준점측량은 발주 시 주관사가 수행하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에 대한 각 수행자의 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점·지구계 측량 | 일필지 측량 | 면적측정 및 계산 |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 경계 조정·협의 | 확정 경계점 설치 | 경계 확정 측량 | 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 |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 성과물 납품 |
|------------|--------|-----------|-------------|----------|-----------|----------|--------------|---------------|--------|
| 주관사 | 협력수행자 | | | 주관사 | | | | | |

가. 주관사(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 1) 자료조사 및 계획준비
- 2) 기준점측량
- 3) 사업지구 내·외 경계측량(지구계 측량)
- 4) 경계조정 및 협의
- 5) 확정 경계점 설치
- 6) 경계확정측량
- 7) 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
- 8)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9) 최종성과에 대한 지적소관청 검사 요청
- 10) 성과물 납품

나. 협력수행자(주식회사 ○○○○)

- 1)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2) 일필지 측량
 - 3) 면적측정 및 계산
 - 4)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5) 일필지측량 측량성과 및 산출성과에 대한 주관사 검증 요청
- ② 공동수급체의 협력수행자는 지적기준점측량 성과 인수일로부터 ○○일 내에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임시경계점 표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락카페인트, 못 등의 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임시경계점표지는 접근 및 표시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 또는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기간 종료 시 효력이 종료한다. 다만, 업무위탁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측량·조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 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공정보고) 공동수급체는 사업지구의 공정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매30일 경과 시마다 지적소관청에게 문서 제출 또는 바른땅시스템 입력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업무위탁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적재조사측량 및 부대업무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9조(구성원의 참여지분 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참여지분 비율은 지적기준점측량을 제외한 공정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주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65%

나. (협력수행자) 주식회사 ○○○○: 35%

② 제1항의 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업무위탁자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비용의 부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참여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부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가. 업무위탁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나.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재조사측량계약서에 따라 해약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업무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지적측량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제14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부는 계약서 첨부용으로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2021년 월 일

◆ 공동수급업체 주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장 ○○○ (인)

◆ 공동수급업체 협력수행사 주식회사 ○○○○ 대표 ○○○ (인)